

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

224

제출년월일 : 1994. 3. 21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改正理由

☐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 시행령 시행('94. 4. 8)에 따라

○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모사전송으로 접수·처리할 수 있으며

○ 행정기관의 장은 모사전송으로 접수·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의 종류를 정하여 민원실 게시 또는 민원사무 편람에 게재하여야 함.

☐ 구청장과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편의를 위하여 구청장과 동장 상호간, 또는 직할시장에게 대행케 하여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한 “중계민원전용” 공인 조각의 근거를 마련코자 함.

2. 主要骨子

☐ 구청장과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구청장과 동장 상호간 또는 직할시장에게 대행케하여 처리할 경우 그 처리에 필요한 당해기관의 “중계민원전용” 구청장, 동장공인을 각각 비치 사용할 수 있도록 함.

☐ “별표 2” 5급 상당 공무원의 공인 규격을 2.1cm 정방형으로 수정하고 “별표 3” 현장민원실 “중계민원전용” 공인을 별지와 같이 함.

3. 關聯法令

☐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 시행령 제22조

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(안)

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 조 중 제 4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구청장과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으로 구청장과 동장 상호간 또는 직할시장에게 대행 처리하게 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과 동장 공인을 따로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“별표 3”과 같이 구청장은 중계민원 전용 동장공인을 사용하여야 하며, 직할시장과 동장은 중계민원전용 구청장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동장은 제②항의 공인을 중계민원처리 사무에도 사용할 수 있다.

제13조 중 제 1 항 단서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보조기관의 장 및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과 현장민원실에서 중계민원 처리를 위한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.

“별표 2”, “별표 3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94. 4. 8부터 시행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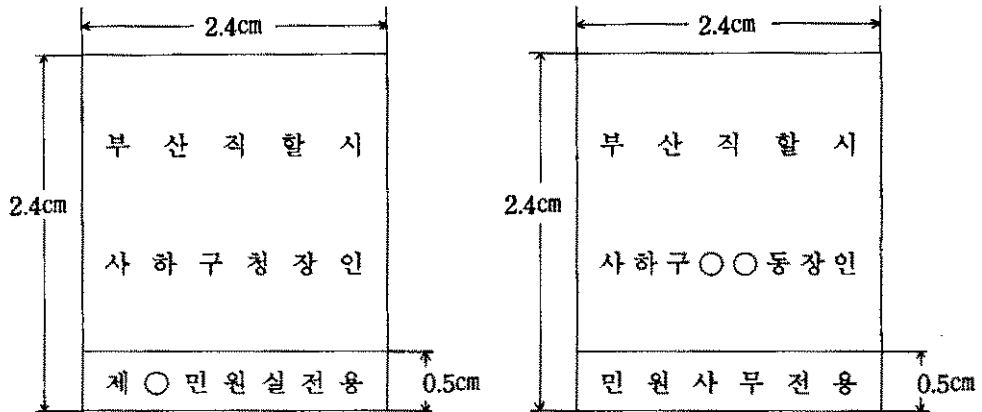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 (안)
제 2 조(공인의 비치사용) ①~③ (생략)	제 2 조(공인의 비치사용) ①~③ (생략)	제 2 조(공인의 비치사용) ①~③ (현행과 같음)	제 2 조(공인의 비치사용) ①~③ (현행과 같음)
④ 구청장과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사전송 기를 통한 제증명 발급사무 일부를 구청장 및 동장이 내부위임 또는 대행하여 처리할 경우 에는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과 동장공 인을 상호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, 그 공 인을 사용할 때에는 “별표 3”과 같이 소속기 관의 중계민원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.	④ 구청장과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으로 구청장과 동장 상호간 또는 직할시장에게 대행 처리하게 할 경우, 그 사 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과 동장공인을 따로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“별표 3”과 같이 구청장은 중계민원전용 동장공인을 사 용하여 하며, 직할시장과 동장은 중계 민원전 용 구청장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동장은 제②항의 공인을 중계민원처리 사무에도 사 용할 수 있다.	④ 구청장과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으로 구청장과 동장 상호간 또는 직할시장에게 대행 처리하게 할 경우, 그 사 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과 동장공인을 따로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“별표 3”과 같이 구청장은 중계민원전용 동장공인을 사 용하여 하며, 직할시장과 동장은 중계 민원전 용 구청장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동장은 제②항의 공인을 중계민원처리 사무에도 사 용할 수 있다.	④ 구청장과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으로 구청장과 동장 상호간 또는 직할시장에게 대행 처리하게 할 경우, 그 사 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과 동장공인을 따로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“별표 3”과 같이 구청장은 중계민원전용 동장공인을 사 용하여 하며, 직할시장과 동장은 중계 민원전 용 구청장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동장은 제②항의 공인을 중계민원처리 사무에도 사 용할 수 있다.
제13조(공인의 관수자) ① (생략)	제13조(공인의 관수자) ① (생략)	제13조(공인의 관수자) ① (현행과 같음)	제13조(공인의 관수자) ① (현행과 같음)
다만,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 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.	다만,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 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.	다만, 보조기관의 장 및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과 현장 민원실에서 중계민원 처리를 위한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.	다만, 보조기관의 장 및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과 현장 민원실에서 중계민원 처리를 위한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.
(별표 2), (별표 3) 별첨	(별표 2), (별표 3) 별첨	(별표 2), (별표 3) 별첨	(별표 2), (별표 3) 별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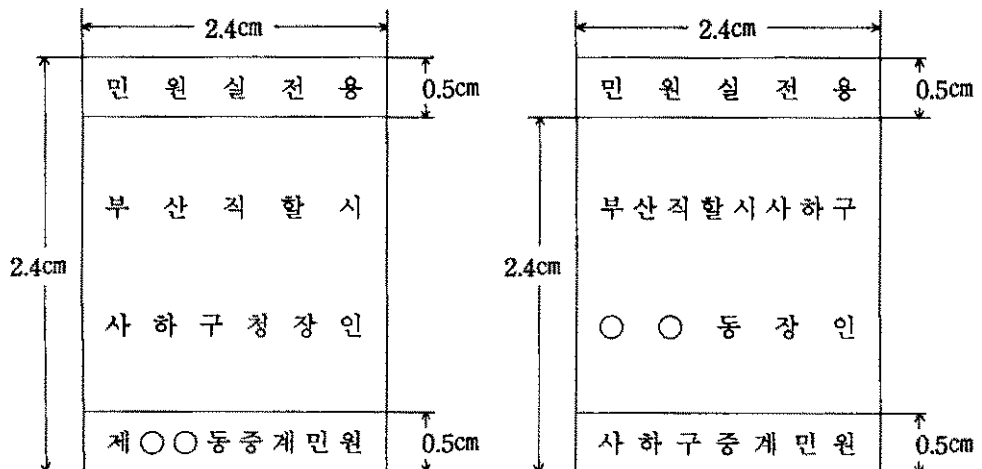
현

행

(별표 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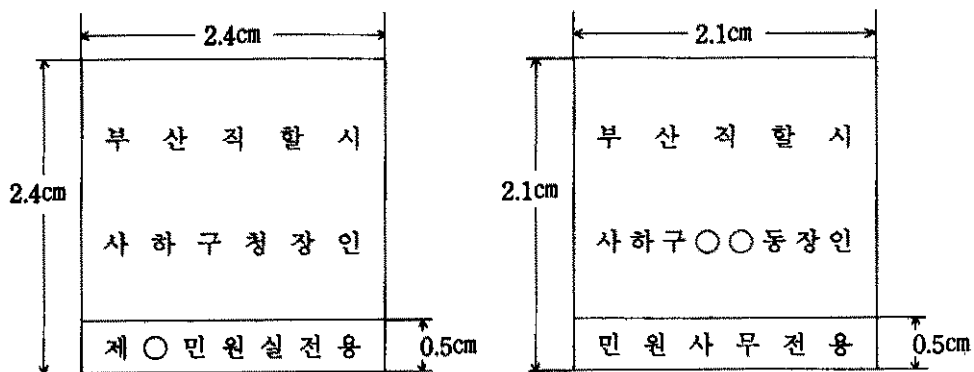


(별표 3)



개 정 (안)

(별표 2)



(별표 3)

